

인천광역시 남동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518 호

2003 년 5 월 30 일 금 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1호 (2003년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고시)-- 3
-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22호 (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(사업명:간석주공맨션아파트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고시))----- 4

공 고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2호 (인천도시관리계획<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>입안을위한공고·열람)----- 5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6호 (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번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입법예고공고)----- 7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7호 (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신조공인공고)-- 13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8호 (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(논현2택지))----- 15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9호 (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)----- 17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71호 (2003년종합토지세과세자료변동신고·공람및이의신청에관한공고)----- 19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: 문화홍보실

고 시

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21호

2003년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고시

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03. 5. 30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적 용 비 율 의 결 정

-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5.0%로 한다.
- ② 2002년말 현재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다 음 -

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	38% 이상
과세표준액 적용비율	39.0%

부 칙

이 고시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22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3. 5. 27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간 석주공맨션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

2. 사업주체의 성명, 주소

○ 성명 : 간석주공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, (주)금호산업

○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96-5,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-1

3. 사업 시행 지의 위치, 면적 또는 규모

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44-1외25필지

○ 연 면 적 : 278,748.00㎡

○ 사업규모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25층 18개 동, 1,733세대

○ 사 업 비 : 169,634,952 천 원

4. 사업시행기간 : 2002. 11 ~ 2005. 9

5. 주요변경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연면적	264,343.65㎡	278,748.00㎡	지하주차장 증가
조경면적	12,285.53㎡	14,472.08㎡	2,186.55㎡증가
주차대수	2,038대	2,056대	18대 증가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2호

인천도시관리계획을위한공고·열람

『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』을 위하여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』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3. 5. 26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

☐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☒ 교통시설(도로)

☐ 도로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11	10	국지 도로	27.50	대3-1	간석동 591-3종	일반 도로		'79.7.20	
변경	소로	1	11	10	국지 도로	68	대3-1	소로3-15 595-1대	일반 도로			
기정	소로	3	15	6	국지 도로	230	간석동 613-8	간석동 762-1	일반 도로		'92.12.28	
변경	소로	3	15	6	국지 도로	110	간석동 613-8	간석동 595-1	일반 도로			

■ 도로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1-11호선	소로1-11호선	●노선연장 ●27.50m→68m ●중점변경	●노선의 연속성 ●환경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개발 ●도로의 기능유지
소로3-15호선	소로3-15호선	●노선축소 ●230m→110m ●중점변경	●영세공장의 산재로 도로개설 곤란 ●도로의 기능상 연계성 불합리. ●인근 폭13m의 대체도로 개설

2. 공고방법 : 일간신문(2개사), 남동구홈페이지 게재, 구보 게재,
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
3. 열람기간 : 열람일로부터 14일간
4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453-2666)
5. 첨부 : 도면게제 생략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6호

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번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입법예고공고

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번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. 5. 29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조례명 :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번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2. 개정취지

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노사문제의 빈번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고문 노무사를 둠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노사문제의 적극 해결과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- 고문번호사 운영조항에 노무사 운영내용을 추가함(안 제1조)
- 고문노무사의 위촉 사항(안 제2조)
- 고문노무사의 역할 정의(안 제3조제2항)
- 고문노무사에 대한 수당지급(안 제6조제3항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03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(참조: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☎ 453-2082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번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☐ 개 정 이 유

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노사문제의 빈번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고문 노무사를 둠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노사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

☐ 주 요 골 자

- ☐ 고문번호사 운영조항에 노무사 운영내용을 추가함(안 제1조)
- ☐ 고문노무사의 위촉 사항(안 제2조)
- ☐ 고문노무사의 역할 정의(안 제3조제2항)
- ☐ 고문노무사에 대한 수당지급(안 제6조제3항)

☐ 본 문

“별첨참조”

☐ 신구조문 대비표

“별첨참조”

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 “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고문변호사”를 “고문변호사 및 노무사”로 한다.

제2조(위촉)중 “개업중인 변호사”를 “개업중인 변호사 및 노무사”로 하고
“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”를 “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1인의 노무사”로 한다.

제3조(직무)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제반 인사노무관리의 자문
2.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노동법 및 노사관계 교육
4. 노동관련 정보의 제공
5. 기타 구청에서 의뢰하는 사항

제4조(임기)중 “고문변호사”를 “고문변호사 및 노무사”로 한다.

제6조(소송비용등)제3항중 “고문변호사”를 “고문변호사 및 노무사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서식중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분	지 급 기 준		승소사례금
	내 용	착수금	
고문노무사 수 당		100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신 · 구조문 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<u>고문변호사</u> 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 ----- <u>고문변호사 및 노무사</u> ----- -----
제2조(위촉)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<u>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</u> 를 위촉할 수 있다.	제2조(위촉)----- -- <u>개업중인 변호사 및 노무사--2인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1인의 노무사</u> ---
제3조(직무)①(생략) ② <u><신 설></u>	제3조(직무)①(현행과 같음) ② <u>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 한다</u> <u>1. 제반 인사노무관리의 자문</u> <u>2.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</u> <u>3. 노동법 및 노사관계 교육</u> <u>4. 노동관련 정보의 제공</u> <u>5. 기타 구청에서 의뢰하는 사항</u>
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.	③----- -----
제4조(임기) <u>고문변호사</u>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	제4조(임기) <u>고문변호사 및 노무사</u> ----- ----- -----
제5조(사건실적부 비치)(생략)	제5조(사건실적부 비치)(현행과 같음)
제6조(소송비용등)①~②(생략)	제6조(소송비용등)①~②(현행과 같음)
③ <u>고문변호사</u> 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③ <u>고문변호사 및 노무사</u> ----- -----
④~⑤(생략)	④~⑤(현행과 같음)

현행				개정안			
(별표)				(별표)			
구분	지급기준		승소사 례금	구분	지급기준		승소사 례금
	내용	착수금			내용	착수금	
고문변호사 수 당		200,000		고문변호사 수 당		-----	
<u><신설></u>				<u>고문노무사</u> 수 당		100,000	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7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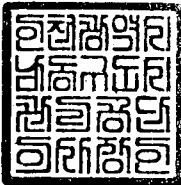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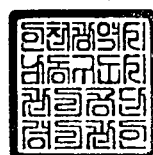
신조공인공고

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직인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. 5. 29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신조 사유 :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창립
2. 신조공인 최초사용년월일 : 2003. 6. 2
3. 신조 공인명

신 조 공인명	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 리공단 이사장인(직인)	신 조 공인명	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 관리공단정수관인	신 조 공인명	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 관리공단경리관인
공인명 인 영		공인명 인 영		공인명 인 영	

신 조 공인명	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 관리공단물품관리관인	신 조 공인명	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 관리공단채권관리관인	신 조 공인명	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 관리공단채무관리관인
공인명 인 영		공인명 인 영		공인명 인 영	

보상액 산정 조서 (지장물 조서)

일련 번호	소재지	지 번	물건종류	구 조	규격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	성명	주 소	
1	논현동	산71	가옥 가추현관 화장실 광	브릭스레트 샷시 및 목재 브릭스레트 목재천막	73.60 17.48 11.52 6.00	김기용	남동구 논현동 산71	
2	논현동	412-24	가옥 가추	목조 목조	20.69 16.43	최승복	남동구 논현동 412-10	
3	논현동	337-10	가옥 가옥 가추 화장실 보일러실1 가추 가추 보일러실2 방	브릭스레트 브릭기와 썬라이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 목조썬라이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	42.79 39.00 8.97 2.55 2.60 3.60 25.20 3.96 8.12	양태주	연수구 연수동 535-2 태경A. 5동 105호	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69호

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

우리구 관내 도로를 무단점용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7(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)에 의거 대집행하고, 대집행시 수거된 적치물을 동법시행령 제29조의5(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) 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, 해당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자가 아래 공고기간내에 동시행령 제29조의6에 의한 적치물등의 반환을 요구시 동법 제86조의2(과태료)에 의거 과태료부과 후 반환토록 하겠으며, 아래 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7(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)에 의거 우리구에 귀속 처리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. 6. 1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공고기간 : 2003년 6월 1일 ~ 2003년 6월 14일(14일간)
도로법시행규칙제29조의2(적치물의관리등)2항
2. 적치물 귀속 처리일 : 2003년 6월14일이후부터 3개월경과후
3. 적치물 귀속 처리내용 : 폐기처리
4.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: “붙임 참조”

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

일련 번호	물건명	수량	보관 년월일	보관장소	위반(적치)장소	취급자	비고
1	빵틀 1 오댕기 1 가스통 2	4	2003. 03.29	간석동창고	만수4동새마을금 고 건너편	한상호	도로무 단점용
2	천막 1 가스통 2	3	2003. 04.01	“	길병원심장센터 앞	“	“
3	화덕3,천막1 테이블2 가스통1	7	2003. 04.02	“	장수동인천대공 원후문	“	“
4	빵튀기1 의자4	5	2003. 04.07	“	간석1동한진(아) 입구	“	“
5	손수레	1	2003. 04.09	“	만수6동현대(아) 입구	“	“
6	천막	1	2003. 04.29	“	구월3동평화할인 마트	“	“
			이	하	여 백		

※ 적치물 귀속처리일 : 공고일 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폐기처분함.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271호

2003년종합토지세과세자료변동신고·공람및이의신청에관한공고

지방세법 제234조의21 신고의무 및 동법 제234조의22 공람 및 이의신청 규정에 의거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관한 변동신고·공람 및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.

2003. 5. 30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- 아 래 -

1. 일 시

- 신고접수 : 2003. 6. 1. ~ 6. 10(10일간)
- 공 람 : 2003. 6. 1. ~ 6. 15(15일간)
- 이의신청 : 2003. 6. 16. ~ 6. 25(10일간)
- ※ 이의신청서 :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비치

2. 장 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

3. 내 용

- 공 람 :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사항
- 신 고 :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이전에 소유권,
토지이동(분할, 합병, 지목변경등) 변경내용
- 이의신청 :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

